

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1. 7. 14(토)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26일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1일(제190회정례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기획관리국장 이장길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함으로써
-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(안 제3조)
 - 학사제도, 공중위생, 환경보전, 행정심판, 지방시험, 정보화관련제도
 - 기타 도민의 권리·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
- 입법예고의 예외(안 제4조)
-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의견제출 및 처리(안 제9조)
- 공청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범수)

- 도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
-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함으로써
-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도보의 신문, 방송, 홈페이지,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“강구하여야 한다”는 강제규정을 “할 수 있다”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입법예고에 탄력적인 운영을 기 하고자 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6조중 필요한 조치를 “강구하여야 한다”를 필요한 조치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충청북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1. 7. 11

제안자 : 황태모의원

1. 수정이유

- 도보외 신문, 방송, 홈페이지,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“강구하여야 한다”는 강제규정을 “할 수 있다”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입법예고에 탄력적인 운영을 기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6조중 필요한 조치를 “강구하여야 한다”를 필요한 조치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충청북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6조중 필요한 조치를 “강구하여야 한다” 를
필요한 조치를 “할 수 있다“ 로 한다.

수정동의 신·구대비표

원 안	수정동의안
<p>제6조(입법예고 방법)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도외에도 신문, 방송,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,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<u>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입법예고 방법)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도외에도 신문, 방송,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,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<u>할 수 있다.</u></p>